5 가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주거 제공 시 합법적 소득원에 근거한 차별 또는 학대로부터 보호

1 뉴저지 주 차별금지법(LAD)은 주거 제공 시 임대료 지급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합법적 소득원에 근거한 차별 또는 학대를 금지합니다. 합법적 소득원에는 섹션 8(Section 8) 주거 선택 바우처를 포함한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임대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이나 바우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비상 임대 지원 프로그램(CVERAP), 주 임대 지원 프로그램(SRAP) 및 임시 임대 지원(TRA)을 통해 받은 임대 보조금이 포함됩니다,

2 그러므로 집주인은 세입자가 섹션 8, CVERAP, SRAP, TRA를 통해서나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임대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기타 보조금 또는 바우처를 통해 임대료를 지급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임대를 거부하거나 임대를 단념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은 번거로운 서류 작업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하거나, 또는 섹션 8에 따라 요구되는 조사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함으로써 섹션 8 바우처를 가진 세입자를 거부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3 또한, 주거 제공자가 바우처 또는 보조금 수용을 거부한다고 명시하거나 바우처 또는 보조금에 대한 제한이 표현된 광고를 포함하여 합법적 소득원에 따라 잠재적 세입자를 어떤 형태로든지 차별하는 임대 광고를 게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섹션 8 불가", " 미안합니다. CVERAP 불가입니다", "TRA 수용 불가", 또는 "본 건물은 섹션 8이 승인되지 않았습니다"와 같은 진술이 포함된 광고는 LAD에 위배됩니다.

4 LAD는 또한 해당 거주지의 다른 세입자들을 포함하여 합법적 소득원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학대, 차별, 또는 위협적인 행동이나 말을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그러한 학대 행위를 인지하고 있거나 인지했어야 한다면, 해당 집주인은 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집주인 또는 주거 제공자는 합법적 소득원으로 임대료를 지급하려고 시도한 것이나 LAD로 보장된 다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려고 시도한 것에 대해 여러분에게 보복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민원을 제출하고자 하신다면, **NJCivilRights.gov**를 방문하시거나, 또는 **866-405-3050**으로 연락해주십시오

NJ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NJCivilRights.gov

DIVISION ON CIVIL RIGHTS

07/23/20